

大學評價制度的 發展과 意義

金 蘭 洙

(延世大 教育科學大 學長)

1. 序

사람은 理性的 存在로서 自己省察을 하고 生存의 倫理的 規制를 하기 마련이며, 또 하여야 만 마땅하다. 더우기 보편타당한 眞理를 탐구하고 인간 생활의 窮極的 價値를 밝히려는 드높은 이념을 지향하는 大學社會는 洋의 東西와 때의 古습을 막론하고 自省의 일환으로 自體評價를 다각도로, 또 다양한 형태로 해 오고 있다.

주어진 제목이 대학 평가의 制度的 發展에 主眼을 두고 그 意義를 밝혀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大學評價制度的 관련 속에서 英·美·日의 상황을 검토하고 韓國의 發展過程을 살펴 보면서 필자 나름대로 大學評價制度에 대해 意義를 부여해 보고자 한다.

2. 大學評價制度的 發展過程

오랜 역사를 가진 英國 大學의 경우 大學 設置方式은 一義的인 것이 아니지만 로빈슨보고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新設된 대학교들을 포함해서 學位授與權을 갖는 대학교가 되고자 하는 대학은 大學校憲章(charter)과 憲章附則의 規定을 수여받는 일에 최종적으로 議會의 承認을 받게 되어 있다.

이 점에서 大學校(university)의 公信力 확립

의 制度的 裝置는 오랜 歷史的 傳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평가의 제도적 관점에서 특기할 것은 大學校補助金委員會(UGC)라고 할 수 있다. 1919년에 창설된 UGC는 대학교들에 대한 國庫補助 建議權을 가지고 支出額에 대해 건의를 하고 그것을 각 대학교별로 適正하게 配分한다는 점에서 諮問役(advisory)과 執行役(executive)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초기에는 缺損 補填의 原則(deficiency principle)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60년대 중반의 新設大學校 增設에 따라서 國庫補助金이 크게 증액되어서 기구 자체의 규모도 擴大되고 기능도 多樣化되고 있다. UGC가 대학교의 經常費補助를 통해서 대학의 諸設置基準 그리고 교육과 연구의 質的 水準維持를 총괄하는 기능은 막중하다고 하겠다. '74년 필자가 방문했을 때로 보면 약 100명의 專門職人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國庫補助建議權과 大學校別配分權은 20여 명의 著名教授들로 구성된 委員會가 행사하고 있는 점에서는 대학교의 개별적 및 집단적 自律權이 보장된 體制라고 할 수 있다. UGC의 大學校補助金은 5년 단위로 책정되게 되어 있으나 近年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해마다 改正되고도 있다. 얼마전 訪韓한 바 있는 David Harrison 총장의 설명에 의하면, 累年制는 폐기되고 單年制 補助額策定化의

傾向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¹⁾ 대체로 3年次의 연도에 UGC의 위원들이 각 대학교를 訪問하여 그 대학의 計劃과 意見을 淸취하고 現場에서의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 후에 委員會 자체가 앞으로의 大學校 發展方策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國庫補助額을 건의하고 각 대학에 대한 配定額을 구체적으로 책정한다. 따라서 UGC의 대학 평가 업무는 건의와 집행의 면에서 國庫補助金의 經常費 組成을 機械적으로 配分하는 行政的 次元을 넘어선다. 그 본보기로 Atkinson 委員會가 率下 大學校들의 蘇聯語科 20 개를 폐쇄하고 敎員과 學生定員을 다른 학과에 轉用하도록 건의한 것이 奏効한 것을 例舉할 수 있다.²⁾ 이보다 앞서 1965~66년 報告로는 케임브리지, 리스, 글라스코의 3개 大學校의 農學部가 폐쇄, 개편 또는 통합된 일도 있다. 그러나 Harrison 총장은 UGC가 政府와 大學校의 架橋로서 中間調整役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英國은 二元制(binary system) 高等教育體制이기 때문에 傳統的 大學校는 UGC가 맡고 그 밖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1964년에 Royal Charter에 의해서 설립된 The Council for National Academic Awards(CNAA)가 後述할 英國의 프로그램 評定制(Programmatic Accreditation)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NAA는 산하에 The Committee for Science and Technology와 The Committee for Arts and Social Studies를 두고 각 대학이 신청한 '코코스(course)'가 學位課程으로서의 適格條件을 구비했는가의 與否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내용으로서는 코코스 담당 敎수진의 資格, 코코스의 內容과 그것을 위한 設備, 敎科課程 및 敎授要目(syllabus), 實驗 實習要件 그리고 학생의 入學資格 등을 다루고 있다.³⁾

美國의 경우는 大學評價의 節次와 基準에 있어서 英國의 體制와 類似한 점이 많다. 그러나 UGC와 같이 大學(校)에 대한 財政的 支援를 통해서 대학내 학과 설치나 프로그램 편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公立과 私立의 二元制(dual system)라는 점에서 영국과는 對照的이다. 영국의 UGC가 議會에서 大學校 憲章과 附則規定을 승인받은 대학의 國庫補助額 策定을 主目的으로 평가 업무를 행하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會員大學(校)들의 自律的인 業績을 토대로 하여 申請한 대학에 대한 適格判定을 해주는 것을 평가의 1次的 目的으로 삼는다. 평가 방식도 機關評定(institutional accreditation)과 大學(校)內 學位 프로그램評定(specialized, programmatic accreditation)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適格判定(accreditation)을 받았다고 해서 財政支援이 즉각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機關評定은 6개 地域協議機關이 關장하고 프로그램 評定은 전국 수준의 學會나 專門協議機關이 주관하는데 우선 業績評定制度를 실시하게 된 目的 내지는 수행하는 機能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⁴⁾

- ① 大學(校) 또는 特定 專門分野의 敎育이 協회의가 설정한 一定水準에 도달하였다고 證明
- ② 학생들의 大學(校) 選定에 도움을 주는 일
- ③ 학생들의 轉·編入時 大學측에 도움을 주는 일
- ④ 공립 및 사립 高等教育機關에 대한 財政支援을 하려 할 때 수혜 가능한 대학 또는 專門敎育 프로그램 선정의 基礎資料로서의 구실
- ⑤ 對內外의 不당한 壓力으로부터 대학을 保

1) David Harrison, *University Evaluation in Great Britain*, 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at KCUE, Oct. '86, p. 5.
 2) *Ibid.*, pp. 6~7.
 3) The CNAA, *Statement No. 3: Memorandum on Course Leading to the Award of the Council's First Degrees*(London: The CNAA, 1965), pp. 3~4.
 4) U.S. Dept. of H.E.W., *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ing Agencies and Associations-Criteria and Procedures for Listing by the U.S. Commissioner of Education*(Washington, D.C.: Accreditation and Institutional Eligibility Unit, Office of Education, 1970), p. 1.

護하는 구실

- ⑥ 대학의 自體改善 努力을 촉진하고 改善目標 설정에 도움을 주는 일
- ⑦ 機關評價 및 計劃 樹立에 대한 教職원의 參與 促進
- ⑧ 專攻履修證書 및 免許證의 公信力 제고와 上級課程 進學時의 基準 제시
- ⑨ 政府補助 대상 기관 선정시의 根據資料로서의 구실

미국에 있어서의 大學(校) 및 特定 프로그램에 대한 業績評價認定制(accreditation system)를 深層的으로 파악하려면 高等教育의 財政體制(financing system)에 대한 理解가 전제되어야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公·私立 二元制下에서의 대학 재정 체제는 混合型이다. 즉 英國을 비롯한 歐洲 각국의 대학 재정 체제는 公費支援의 원칙에 따라 大學修學費가 주로 公共負擔으로 되어서 대학 수락이 하나의 特典(privilege)으로 賦與되는 無償型(free-cost model)이다. 이에 반해서 필리핀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주로 受益者負擔 原則으로 全額負擔型(full-cost model)의 대학 재정 체제이다. 美國의 경우 州立大學은 修學費가 적고 私立大學은 대학에 따라 千差萬別이나 修學者負擔 原則으로 된 混合型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78년 미국의 大學院政策 및 行政실제에 대한 9개국 대표들의 1개월간에 걸친 視察 및 協議 모임 때 “미국의 고등교육 체제는 自由市場의 原則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美國教育協議會(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의 高等教育部長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다. 당시에 약 3,100개 機關(초급 대학 1,200, 4년제 대학 900, 碩士學位까지의 대학 600, 박사 학위까지 개설하는 대학 400)이 業績評定을 받은 고등교육 기관들이었다. 업적 평정을 받지 않은 고등교육 기관의 수도 1만 개는 넘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推定이었다. '85년 현재로는 4,100개로 추정하고 있다. 약 1,100만 명의 初級 및 4년제 과정 학생과 약 120만 명의 大學院生이 있는 高等教育人口 規模이기 때문에 玉·石을 가

리지 않고서는 학생, 학부모, 정부로서는 混亂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서 100여 년의 傳統을 가진 自律的 業績評定制(voluntary accreditation system)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오게 된 源泉의 理由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Dickey와 Miller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레섬의 法則처럼 皮相的이고 不實한 대학에서 남발한 學位가 質的으로 극히 優秀한 大學教育을 통하여 힘들어 취득한 학위의 質的 價値마저도 社會的으로 平價切下시켜 왔다”는 歎聲을 읊조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미국 고등교육에 있어서 業績評定制가 겪어 온 迂餘曲折을 詳述할 지면이 없거나와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각 협의회의 會員大學으로 相互認定을 공표하는 業績評定制는 대학교육의 質的 統制와 향상에 대한 自律的 集團規制策으로서 功적이 크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도 지니고 있다.

작년에 延世大 百周年 기념 국제 학술 회의에서 ‘未來世界의 大學’에 대한 主題發表를 한 바 있는 Nathan Pusey 박사(전 하바드대학교 총장)에게 “大學 業績評定을 받지 않는다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그런 일에 신경 써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의 이러한 端的 表現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0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大學教育 評價의 問題와 展望’ 세미나에서 미국 대학의 업적 평정제를 발표한 미국 中等學校以後教育 業績評定制 協議會(The 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의 會長 Richard M. Millard 박사의 自省的 論評은 그 동안의 狀況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즉 미국의 고등교육 업적 평정제는 종합적인 성격을 띤 것이고 또 미국 特有的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高等教育이 지니는 多樣性에 적합하도록 考案된 것이고, 質的 評價를 통한 고등교육 向上策 圖謀를 民間主導로 自律的으로 행해 온 오랜 傳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생각 나름으로는 수천에 이르는 大學들이 業績評定 과정에 自進 參與하고 있

5) F.G. Dickey & J.W. Miller, *A Current Perspective on Accreditation*(Washington, D.C.: AAHE, 1972), p. 56.

는데 이는 미국의 國益伸張에 도움을 주어 왔다고 본다. 동시에 지난날 그리웠듯이 앞으로는是非非의 批判對象이 되고 緊張의 源泉 구실을 하리라고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의 하나는 業績을 評價 받아서 相互認定을 받고 또 그것을 維持하는 일이 대부분의 高等教育 기관에 對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⁶⁾

日本의 경우, 天城 勲이 보는 바로는 대학 평가의 研究나 그 實踐이 貧弱한 狀況에 놓여 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대학에 대한 研究가 취약한 데 起因하는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英·美의 狀況과 비교해서 日本의 現況을 省察한 그의 相對的 自體評價일 뿐이지 실제로 대학 평가 사업이 不振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예컨대, 大學의 類型을 미국의 카네기 高等教育 協議會의 분류 기준과 절차에 준해서 1979년 時點에서 研究大(R) 24, 大學院大(D₁) 121, 準大學院大(D₂) 35, 碩士大(M) 85, 學部大(C) 178 개로 443의 大學群을 比較分析하여 研究 및 教育 그리고 選拔機能 등을 상세히 밝힌 일을 보면 評價研究가 치밀한 점을 엿볼 수 있다.⁷⁾

天城 勲의 所論에 의하면, 英國에서와 마찬가지로 日本에서도 2次大戰後 新制大學을 발족시키며 따라서 대학 문호를 되도록 開放하여 대학의 설립과 확충을 비교적 용이하게 하되, 質의 水準을 유지·향상시키는 일을 대학인들의 自律的 集團規制에 위임하는 미국의 業績評定制를 1950년에 도입했었다. 대학 설치는 文部省長官의 認可 절차를 밟아야 하나 인가 기준은 대학인의 조직인 大學基準協會가 설정한 大學 基準을 準用하도록 했었다. 그리하여 대학으로서의 最低基準을 충족시켜서 文部省의 인가를 얻은 대학이 그 최저 기준에서 自體向上努力을 한 業績評定은 大學基準協會가 대학 기준에 따라서 判定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폐전 후의 經濟困窮 속에서는 많은 대학들에게 최저 기준이 실질적으로는 最高基準이

됨으로써 그것을 넘어서는 水準向上을 위한 自體努力이 어렵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도 新制大學의 實態가 교육 및 연구 조건에서 脆弱하여 文部省의 인가 기준을 上向調整하고 인가의 嚴正性을 기하라는 社會的 批難이 드높아지면서 認可行政이 強化되는 방향으로 進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天城 勲은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한편, 강하게 期待를 모았던 大學基準協會의 適格認定機能도 기대에 어긋났다. 日本의 高等教育機關은 戰前에서부터의 성격으로서 相互競爭이라든가 連帶가 키워져 있지 않았고, 同業者의 自主規制的(미국의 아크레디테이션을 가르킴)인 기능에도 익숙해 있지 못하였다. 이에 결들여서 설치 인가를 받으면 法律的으로나 社會的으로 대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美國에서와 같이 大學基準協會의 適格認定을 받아야만 비로소 사회적으로 온전한 대학으로 公認을 받고, 또 그러한 인정을 期限附로 하는 적격 인정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實效도 따르지 않는 風土 속에서는 기대한 기능을 발휘할 條件도 갖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1957년 제정의 「大學設置基準」은 그간 몇 차례 改正을 거쳤고, '76년 私立學校振興助成法 제정을 계기로 私立大學에 대한 財政支援이 本格化되면서 대학내의 학과 설치와 학생 정원의 증가는 届出制에서 認可制로 전환되었다.

韓國의 경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大學의 設置, 增科 및 學生定員은 認可制로 되어 있다. 그런데로 그간의 특기할 만한 사항을 몇 가지 例擧할 수 있다. 첫째로, 대학의 업적에 대한 評定業務를 官主導에서 專門 委員會가 실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하여 이른바 '實驗大學'의 學事改革事業을 교수들로 구성된 評價委員會가 주도한 일이다. 同委員會의 建議를 전폭적으로 받아

6) Richard M. Millard, *The American Accrediting System*, A paper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by KCUE, Oct. 22, '86, p. 20.

7) 天野郁夫, “大學群의 比較研究” 慶伊富長(編), *大學評價의 研究*(東京大學 出版會, 1984), pp. 70~81 참조.

8) 天城 勲, *上揭文*, p. 279.

들여서 문교부가 학사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은 특記할 만하다. 그 밖에도 수시로 委員會를 구성하여 대학의 謠計劃과 그 運營實態를 評價研究했지만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추진의 主體가 行政府였다는 점에서 크게는 官主導型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가 大學과 대학 프로그램 評價業務를 주도하였고, 1984년 同協議會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는 大學教育和 大學行政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料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學事 및 運營全般에 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同法 第18條 1項)는 明文文化된 法的 根據를 가지고 대학 평가 업무가 自律的 協議機構로 移管되었다. 그리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는 지체없이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政策建議權과 責任이 부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大學評價의 意義

오늘날 高等教育機關이 수행하여야 할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기능은 多岐多樣化되어 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立身出世의 발판이 大學卒業證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진학하는 이른바 職業主義性向이 학과 선정에 결정적 구실을 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知識產業構造가 增長됨에 따라서 高級 專門人力을 量產하기 위해서 대학에 대한 公共投資를 확충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 본래의 使命으로 보면 學問的 卓越性 신장이 核心機能으로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人類의 福祉增進을 위해서 보편타당한 진리와 인간다운 삶을 옹고 바르게 방향짓기 위한 窮極的 價値를 추구하는 것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대학이 맡아야 할 唯特한 召命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深奧한 學理의 探究와 學術의 광범하고도 精緻한 應用을 목적으로 제각기 분야에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學

者들에게는 學問研究의 自由를 확보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동된 關心이요, 이를 보장할 대학 운영의 自律性을 열망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知性的 都市인 大學은 그 설립의 公·私立을 막론하고 대학에 부과된 研究·教育·公共 奉仕의 제 기능을 가장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管理의 기준 설정과 運營 등에 대한 정책 결정을 自主的으로 행하기를 원한다.

理想論을 펴 나가기로 하면 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大學外的 機構의 關與는 대학 본래의 理念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극언할 수도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大學校가 業績評定을 기피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실은 대학의 설치에 政府의 承認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운영의 실제에 대한 行政權의 關與는 각국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行政關與는 監督的 機能보다는 助長的 指導機能으로 역점이 轉換되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위해 대학 평가의 制度的 裝置가 활용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樣相은 다르다.

대학의 다양한 기능과 巨大化된 規模의 운영을 效率化하려면 外部資源의 依存度가 높아지게 되고, 또 대학 스스로 公共支援을 요청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社會一般의 評價와 關與를 부득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대학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이 自足·自立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못한 현실을 直視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James A. Perkins의 표현을 빌면 “전통적으로 학자들의 自己充足의 人 共同生活場으로 여겨 왔던 大學은 現代에 들어와서 自己充足性은 한낱 鄉愁 어린 꿈에 지나지 않는다⁹⁾”고 할 수도 있다.

현대의 대학은 기관의 自律性 固執 속에서 自閉症에 빠져서는 그 存立 自體가 위협받게 된다. 대학의 課業環境에서 提起되는 다양한 挑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또 스스로 적절하고도 積極的인 對應策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集團의 自律策의 일환으로서 大學人들이 주도하는 大學評價事業은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

9) J.A. Perkins, *The University in Transition*(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6), p. 64.

그리하여 필자는 '72년에 韓國 高等教育 改革의 基本方向 摸索의 일환으로 학계, 행정계, 산업계 인사 3천 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設問調査를 실시한 바 있었다.

“高等教育機關, 學科 및 學位課程의 認可는 문교부 조정하에 高等教育 政策審議會(가칭)와 각 專門 學會의 協동으로 구성하는 高等教育機關業績評定委員會(가칭)가 評定함으로써 專門性과 自律性을 높 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再評價 認定하여 운영의 充實度 및 效率 性を 확인함으로써 고등교육 기관의 沈滯現象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調査 結果는 80% 찬성, 12% 中立的 見解 그리고 8%가 懷疑的 反應이었다.¹⁰⁾ 대학에 대한 機關評價 및 프로그램 評價를 대학인들이 주도하여야 할 意義는 다음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로, 대학 평가에 대한 公信力 提高에 기여할 수 있다. 現代 行政에 있어서 管理 운영에 대한 專門的 識見과 누적된 經驗을 가진 행정 官료의 存在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학문 사회에 대한 管理體制의 개선 방안 강구를 위한 評價研究에 있어서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學界 專門家集團이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行政的 및 財政的 支援를 받을 때 大學施策에 대한 社會的 公信力을 제고할 수가 있고 正統性(legitimacy)을 내세울 수 있다.

둘째로, 대학 평가의 專門性을 신장시킬 수가 있다. 학문의 小宇宙로서 제각기의 學術的 特殊性과 獨特性을 가지고 있으면서 專門的 資質을 달린 成員들로 구성된 대학 사회는 각기의 科 業이 매우 다양한 고도의 複合組織 性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機關評價 및 프로그램 평가를 효율화하려면 각 학문 영역별로 전문적 識 見과 학사 管理에 대한 深層經驗을 누적시켜서 造詣를 갖춘 학자들의 質的 判斷力과 創意的 構 想을 활용할 때 效率(efficiency)을 드높일 수가 있다.

셋째로, 대학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一貫性 및 安定性을 유지하는 데 공헌할 수가 있

다. 一般 行政官僚는 일정한 세부 부서에 장기적으로 고정 배치되기보다는 上昇 또는 水平移動過程에서 여러 부서의 업무를 맡아 보면서 행정 업무에 綜合的으로 通達하게 되는 利點을 갖는다. 그러나 特定 業務에 대한 深層把握을 해서 專門性을 實質的으로 갖추는 데는 不利點도 따른다. 따라서 業務의 性질과 맡은 사람의 資質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지만, 人事移動에 따라서는 方針의 樹立과 施行에 一貫性이 없어지고 安定性이 약화된 잠재적 위험은 恒存한다. 그러므로 생애를 두고 각기의 專門性을 深化시켜 나가는 專門家集團 속에 求心點을 두고 그들의 참여를 持續化시켜 나가면 委員들은 부분적으로 교체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大學 評價事業은 一貫性을 지니고 累積的인 效果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 評價基準의 適正化 그리고 節次의 效率化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평가 업무를 專門家集團이 주도하여야만 대학 평가의 本來的 意義를 살리고 대학교육의 質的 向上策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은 前述한 英·美의 傳統에 비추어 보아서도 수긍이 가는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 평가는 一連의 過程을 밟게 되는데 計劃의 수립, 委員의 위촉, 評定業務 그리고 提案作成 등이다. 평가 결과를 行政的·財政的 支援策 樹立에 활용하는 일은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진 기관의 固有業務에 속할 것이다. 그런데로 대학들의 自律的 協議機構가 주도하는 일이 대학 평가의 正統性, 效率性 및 一貫性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韓國大學教育協議會에 大學評價業務 遂行에 대한 法的 基礎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 간 수많은 大學 및 프로그램에 대한 評價研究(evaluation research)가 大學政策 樹立과 施策의 效率性 檢討에 활용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結

대학 평가의 制度的 發展過程을 英·美·日의

10) 金蘭洙 외, 韓國 高等教育 改革의 方向 摸索, 文敎部 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屬課題, 1973, 113面.

경우를 위주로 살펴본 까닭은 제각기의 特異性을 比較檢討하는 데 主眼點을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등교육 체제가 大衆化됨에 따라 單位大學外的 機構의 評價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제각기 趣向은 달리하여도 대학교육의 質的 統制 나아가서는 향상책 강구에 基本 目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大學 業績

評定體制도 國際的 眼目으로 보면 손색이 없다. 다만 評價結果의 活用策이 實效를 거둘 수 있는 次元으로까지 進展되어 나가도록 行政當局, 評價專擔機構 그리고 참여하는 專門家集團이 協調의 뜻을 넓히고 內實을 기하는 노력이 앞으로의 課題로 보여진다. *

<記事訂正>

「大學教育」誌 제23호(1986. 9. 1字)에 게재된 “大學의 學術情報 交流體制”(李斗榮, 中央大 圖書館學科) 중 부록 ‘대학(교) 도서관 보유 장서수와 법정 기준치’에서 湖西大學과 관련된 통계 수치가 필자의 계산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訂正합니다.

()안의 수 : 법정기준치

	학 과 수	졸업정원	보유장서수	장서확보율(%)
착오사항	15	5,380	48,164 (161,400)	30
정정사항	14	2,320	48,164 (76,560)	63